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663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현재

담당변호사 문봉식, 김태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안성용, 안은혜, 오현일, 조금규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제23439호로 공탁된 286,328,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시 강남구 D건물, E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1).
(예비적으로) 피고와 망 F 사이의 2018. 9. 21.자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제23439호로 공탁된 286,328,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시 강남구 D건물, E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F(2019. 1.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9. 1. G과 사이에 '망인이 G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제4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8. 9. 21.부터 2020. 9. 20.까지,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9,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61,000,000원은 2018. 9. 21.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그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을다 제5호증), 같은 날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1.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액면금 261,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인출하여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망인은 G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으로 위 수표를 지급하였다(을다 제1호증). 당시 망인의 요청으로 G, 망인,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실하면 G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망인과 G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위 합의의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고, 피고에게 수기로 위 합의 내용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을다 제5호증)

다. 피고는 2019. 5. 29. G에게 '망인과 G이 2018. 9.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1. 잔금을 지급할 때에 망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G이 이를 수락하였으니,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0. 9. 20. 또는 그 이전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경우 반드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갑 제3호증의 3), 그 무렵 위 우편물이 G에게 도달하였다2).
라. 원고는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13409호로 채무자를 '망인의 상속인 C' 제3채무자를 'G', 청구금액을 719,278,825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갑 제1호증), 위 결정문이 2019. 7. 18. G에게 송달되었다.

마. G은 2020. 10. 14.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제23439호로 피고와 망인의 상속인인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에서 연체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인 286,328,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다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 1) 망인이 2018. 9. 21. 피고에게 '망인의 G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G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2)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위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C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출급청구권이 C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 1) 망인과 피고, G이 2018. 9. 21.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위 합의 내용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망인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 2019. 7. 12.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 C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 2) 그러나 한편, 망인이 G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할 당시에 망인, G, 피고의 3자간 합의(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할 당시부터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은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2019. 5. 29. G에게 '이 사건 합의'의 내용 및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 전인 2019. 6.경 위 내용증명 우편물이 G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만일 이 사건 합의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 및 '그에 대한 G의 승낙'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피고의 위 내용증명 우편물은 '망인이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G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 사건 추심명령 전에 이미 위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망인과 그 상속인인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2) 이에 원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망인의 상속인인 C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전인 2015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3456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937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금 원금 5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망인 및 그 상속인 C에 대한 위 판결들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채무자의 무자력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2. 26. 2019느단172호로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실, 당시 제출된 망인의 재산 목록에는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액수가 적극재산보다 약 7억 원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도 망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없는데 이를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망인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라.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우선 앞서 본 것처럼,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261,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위 합의로 인해 망인의 책임재산 중 종전보다 감소된 부분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계약금 29,000,000원 부분에 한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만일 잔금을 미지급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 계약금 29,000,000원은 위약금으로 몰취될 상황에 있었던 점, ③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7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소극재산은 약 77억 원이었음)이었던 반면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망인의 책임재산 중 실제로 피고에게 이전된 재산은 최대로 산정해도 계약금 29,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가 망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기환, 판사 이용희, 판사 배다현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제23439호의 피공탁자’가 C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C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행한다.

2) 소 제기 당시 피고였던 G이 제출한 2020. 8. 28.자 답변서 및 그에 첨부된 G 작성의 2019. 7. 22.자 내용증명우편물에 G이 2019. 6.경 위 우편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